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안 제3조)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및 선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운임의 신고 및 차량(안 제6조 및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과 운행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특히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운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2개 이상의 시·군에 노선이 걸치는 경우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음.
-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의 대상노선, 선정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8. 12. 13.~'19. 1. 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2항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및 같은 조 제4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4개소 이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 신청 및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운송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 시행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